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. 7. 3 선고 2023가단12801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주식회사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6. 19.

판 결 선 고 2024. 7. 3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을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C과 대여금 계약(이하 ‘이 사건

대부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관하여 “연대보증”을 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(이하 ‘이 사건 선행소송’이라고 한다)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(대법원 1976. 12. 14.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).

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부계약에 대한 “연대보증채무”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, 이는 확정된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고,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의 오류에 관한 내용은 모두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이다.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고,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효정